제정 2012년 3월 6일 규칙 제708호 일부개정 2014년 4월 15일 규칙 제754호 (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) 일부개정 2014년 5월 30일 규칙 제758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12일 규칙 제806호 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일부개정 2019년 2월 11일 규칙 제843호 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일부개정 2019년 10월 28일 규칙 제863호 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일부개정 2019년 10월 28일 규칙 제863호 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)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. 다만, 각 호의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.
  - 1.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 :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
  - 2.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: 동별 2명
- 제3조(위원의 위촉)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- 제4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·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.
  - ② 분과위원회는 업무 분야별로 4개 분과로 구성한다. 분과위원별 담당부서는 별표 1과 같다.
  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.
  - 1. 같은 동에 거주(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 포함한다)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

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

- 2.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 예산과 개인적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
- 3.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5조(회의소집)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.
  -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6조(회의공개의 원칙) 회의는 공개하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, 심의안건, 결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4. 11. 12〉
- 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,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·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.
- 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
  - 2.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  - 3. 위원회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 - 4.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
- 제9조(자료제출)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 게 자료를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0조(예산학교)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 실무, 각종 소양 교육, 주민참여 방법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- 제11조(운영위원회)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.

(추 1)

-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위원을 위촉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.
-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시민제안사업 분과별 분류 및 현장방문과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계획 수립
- 2.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
- 3. 그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로 부치는 사항 협의

[본조신설 2014. 5. 30]

- 제12조(민·관협의회) ① 조례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민·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,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부시장은 민·관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다.
  - ③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  - ④ 민·관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예산 담당으로 한다.

[제11조에서 이동〈2014. 5. 30〉]

- 제13조(주민참여예산 연구회) ① 조례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운영할 경우, 예산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.
  -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연구 및 의견 제시
  - 2.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
  - 3.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
  - 4. 기타 연구회 목적을 위해 필요한 활동

[제12조에서 이동〈2014. 5. 30〉]

제14조(지역회의 구성) ① 지역회의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(주민자치회)에서 대행한다.

540 - 3 (추 1)

② 지역회의의 의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(주민자치회 회장)이, 부의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(주민자치회 부회장)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5. 30]

제15조(지역회의 운영) 그 밖에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24. 11. 12]

제16조(회의수당 및 지급) 시장은 협의회 및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회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[제13조에서 이동〈2014. 5. 30〉]

**제17조(세부 운영규칙)**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〈개정 2014. 5. 30〉

[제목개정 2014. 5. 30, 제14조에서 이동〈2014. 5. 30〉]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〈2014. 4. 15 규칙 제754호,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「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 별표 1의 자치행정부과위원회의 담당부서중 "민원토지과"를 "민원여권과"로 하며, 도 시정책분과위원회의 담당부서 중 "차량등록사업소"를 "토지정보과, 차량등록과"로 한 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참고 중 "민원토지과"를 각각 "민원여권과"로 하며, "차량등록사업소"를 각각 "토지정보과, 차량등록과"로 한다.

**부칙** 〈2014. 5. 30 규칙 제758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〈2017. 4. 12 규칙 제80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① 「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 과 위 원 회	담 당 부 서	비고
<u>안전행정</u> 분과위원회	<u>안전행정국</u> 소관부서, 관, 도서관, (동주민센터)	
도시정책분과위원회	<u>미래도시국</u> 소관부서	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u>안전행정</u>분과 : <u>안전행정국</u> 소관부서, 관, 도서관, (동주민센터)

복지문화분과 : 복지교육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부서

도시정책분과: 미래도시국 소관부서

보건환경분과 :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부서

⑧ 부터 ⑨ 까지 생략

참

**부칙** 〈2019. 2. 11 규칙 제84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 과 위 원 회	담 당 부 서	비고
도시정책분과위원회	도시주택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	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전행정분과 : 안전행정국 소관부서, 관, 도서관, (동주민센터)

참 고 복지문화분과 : 복지교육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부서

도시정책분과: 도시주택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

보건환경분과: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부서

⑤ 부터 ① 까지 생략

**부칙** 〈2019. 10. 28 규칙 제86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 과 위 원 회	담 당 부 서	비고
안전행정분과위원회	자치행정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, 관, 도서관, (동행정복지센터)	
도시정책분과위원회	도시주택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	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참 고 안전행정분과: 자치행정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, 관, 도서관, (동행정복지센터) 복지문화분과: 복지교육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부서 도시정책분과: 도시주택국, 시민안전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 보건환경분과: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부서

### ② 생략

**부칙** 〈2024. 11. 12 규칙 제966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〈개정 2019. 10. 28〉

#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

분 과 위 원 회	담 당 부 서	비고
안전행정분과위원회	자치행정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, 관, 도서관, (동행정복지센터)	
복지문화분과위원회	복지교육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	
도시정책분과위원회	도시주택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	
보건환경분과위원회	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부서	

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24. 11. 12〉

###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가입신청서

(일반주민 위원용)

성 명		생년월일		성별	
주 소					
직장 및	직장명 :				
전화번호	☞ 휴대폰 :		자택 :		
주요경력					
E – mail			*	《 공지사항과 참고기	자료 발송시 필요함.
참여희망	① 자치행정 ②	복지문화 ③ 도시	정책 ④ 보건환경		
분과위원회	제1희망	제2:	희망	제3희망	
참 고	안전행정분과: 자치행정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, 관, 도서관, (동행정복지센터) 복지문화분과: 복지교육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부서 도시정책분과: 도시주택국, 시민안전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 보건환경분과: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부서				

※ 조례 제2조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오산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

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오 산 시 장 귀하

(추 1) 540 - 8

[별지 제2호서식] 〈개정 2024. 11. 12〉

#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

(주민자치위원회 추천용)

성 명		생년월일		성별		
주 소						
소 속 명	(직위 :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등)					
직장 및	직장명 :					
전화번호	☞ 휴대폰 : 자택 :					
주 요 경 력						
E – mail	※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.					
참여희망	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도시정책 ④ 보건환경					
분과위원회	제1희망	X	12희망	제3희망		
참 고	안전행정분과: 자치행정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, 관, 도서관, (동행정복지센터) 복지문화분과: 복지교육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부서 도시정책분과: 도시주택국, 시민안전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 보건환경분과: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부서					

※ 조례 제2조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오산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

위 본인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동 주민자치위원장 (직인)

오 산 시 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제 호

위 촉 장

○ 성 명:

○ 주 소:

○ 위 촉 기 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귀하를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오 산 시 장(인)

(추 1) 540 - 10

### [별지 제4호서식]

##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

외의(군과)명	П	회의(분과)	명	
---------	---	--------	---	--

일 시				장 :	소		
취사기점	재적위원	참석	불참	(불참위원)			
참석상황							
안 건							
,							
○ 심의내용							
○ 의결사항							
이 기원가 8							
○ 기타사항							
		원 장		부위	원장		.1
	(변화	<b>과위원장</b> )		(분과부	위원장)	간 	사
서 명	성명	서명		성명	서명	성명	서명